

# 검사능력 총발휘로 단속강화

## 농약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 및 단속계획

국립농업자재검사소 이 덕 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식량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었고, 특히 좁은 경지면적으로 많은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안보적인 차원에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농산물 증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농작물의 병충해 방제를 위한 노력이 영농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병충해 방제가 농산물 증산에 있어서 중요한 증산요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충해 방제를 위한 우수농약의 개발 및 보급과 이의 품질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우수한 농약이 유통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농약의 품질관리는 농약제조업체가 자사제품에 대한 검사를 하여 출하하는 자체품질 관리이나 농약 품질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가기관에서 검사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국립농업자재검사소에서 제조업체가 자체검사를 필하여 시중에 출하한 농약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를 직권으로 실시하고 아울러 부정 또는 품질불량 농약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면 금년도의 농약 품질관리를 위한 직권검사와 불량농약 단속을 어떻게 실시하는가 살펴보기로 하자

### 직 권 검 사

농약의 품질관리를 위한 직권검사

는 이화학적 검사와 생물학적 검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 ○검사시로 발취

금년에는 직권검사용 시료를 1,100건 발취할 계획이다. 시료는 제조회사별 및 농약별로 그 생산량이나 용도가 다르므로 발취수량도 이에 맞도록 하여 각 농약에 대한 검사가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이다.

이들 시료는 주로 농협(단협)이나 시중판매상 또는 제조공장에서 발취하며 농협 또는 시중 판매상에서 발취하는 시료에 대하여는 발취확인서를 발급하여 이에 의해 제조업체가 발취농약을 보상해 주도록 하고 있다.

### ○이화학적 직권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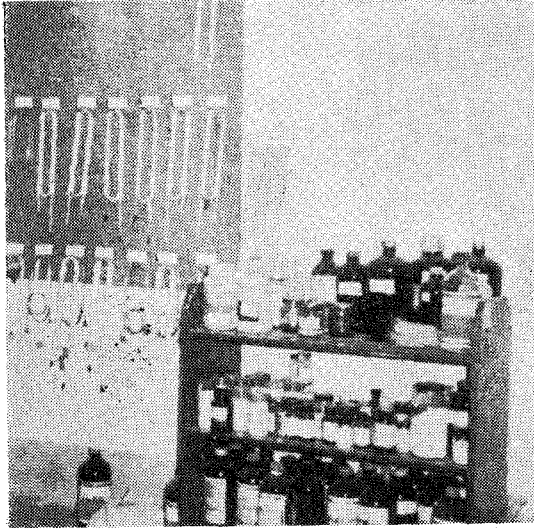
금년의 이화학적 직권검사 계획건수는 2,200건으로 검사능력 내에서 최대한 많은 건수를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능력의 제고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작년에 최신정밀분석기기를 도입하여 현재 HPLC등 분석기기를 최대한 가동 복수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검사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항온·항습실을 설치하였을 뿐 아니라 일반분석방법을 최신기체분석방법으로 바꾸는 등 검사

시설과 방법을 현대화 했으며, 분석요원들의 기술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이화학적 검사는 시중 유통농약의 유효성분 및 물리성에 대한 검사는 물론 농약제조업체의 자사제품에 대한 자체검사 실시 여부, 제조원단위 준수 여부 및 자체검사 성적서 제출 전에 출하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며, 농약제조업체가 제출하는 자체검사 성적서를 검토하여 자체품질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농약이나 제조원단위의 상이 등 문제가 내있는 것으로 지적 되는 농약 등에 대하여도 즉시 시료를 발취하여 이화학적 검사를 한다.

### ○제조시설 검사

또한 농약 제조시설의 보강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농약 제조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계끔 농약제조업체의 시설검사를 실시하는데, 각 농약제조업체의 농약 제제(製劑) 별로 필요한 제조시설 및 자동포장시설 설치 여부, 자체검사를 위한 이화학적 검사시설과 생물학적 검사시설로서 검사기기 및 시험포장의 구비 여부와 전문기술자 확보 등에 대하여 검사를 한다. 이러한 검사와 병행하여 제조공장에 대한 품질관리를 지도하여 제조업체의 자체



◇ 농약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회사는 자체검사를 엄격히 실시하고 있다.

품질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체 품질관리 체제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 ○생물학적 직권검사

금년의 농약 품질관리를 위한 생물학적 직권검사는 850건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검사내용을 보면 원제 및 제품공급원이 다른 농약에 대한 약효 약해 및 독성검사와 국내개발이 오래된 농약의 약효 및 약해검사를 하므로써 약효 및 약해에 대한 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신제품 개발

보급에 따른 약해 검사와 민원대상 농약에 대한 검사를 할 것이다.

즉, 작년의 농약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농약의 제조는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이면 정부가 고시한 품목을 누구든지 등록하여 제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수요량이 많은 품목이나 인기품목은 여러업체가 제조하고 있으나 각 제조업체가 동일한 품목의 농약제조에 사용하는 원제는 개발당시의 공급선(供給先)이 아닌 각기 다른 공급선으로부터

들어오고 있으므로 동일한 품목의 농약이라도 제조업체에 따라 그 농약의 개발 당시에 사용했던 것과는 제조공정 및 순도 등이 다른 원제를 사용하게 되어 이화학적인 유효성분 및 물리성에는 이상이 없더라도 약효, 약해 및 독성치는 당초 개발된 농약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 농약에 대하여 생물학적인 약효, 약해 및 독성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있는 농약을 선별해 내며, 동일한 품목의 농약을 동일한 원제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체가 다르므로써 농약의 실제 농작물 사용상에서의 약효, 약해 및

독성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제품 공급원이 다양한 농약에 대하여 생물학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 농약을 적출(摘出)해 내고자 한다.

### 보급오래된 농약에 대한 검사강화

또한 농약을 장기간 사용하면 병충해에 저항성이 생겨서 개발 당시에 비해 약효가 떨어지거나 약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내개발이 오래된 농약에 대하여 약효 및 약해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약의 개발 당시에는 보급되지 않았던 농작물의 새로운 품종들이 계속 보급되므로써 실제 농약 사용시에는 개발시험 당시와는 다른 품종에 사용하게 되어 약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품종이 보급되고 있는 농작물에 사용하는 농약들에 대하여 작물별, 품종별 및 사용시기별로 약해검사를 할 계획이다.

### 민원농약은 중점검사 실시

그리고 영농지원센터 및 영농협의회 등의 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되어 민원이 야기되었던 농약에 대하여 그 농약의 품질에 이상이 있는지를 검사 한다.

농약의 대부분은 화학적 합성물질이나 항생제(抗生劑) 또는 균제(菌

體) 같은 생물학적 제제로 된 농약들의 품질검사는 이화학적 분석으로는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의 항생제 검사방법과 동일하게 역가검사(力價檢査)를 실시하여 농약의 품질을 검사하고 있다.

### 올해는 벌써 일차 일제검사완료

이와같은 직권검사를 통하여 불량하다고 판명된 농약에 대하여는 해당 농약전량을 수거하여 폐기하거나 재가공토록 하며, 품목등록의 최소 또는 고시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년에는 영농기가 시작되어 농민들이 농약을 구입하여 사용하기 전에 시중유통농약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 단 속 검 사

부정농약의 생산 및 유통을 근절시켜 농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우량농약을 공급하는 유통체제를 확립코자 단속을 하고 있다.

단속은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농약을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품질이 불량을 농약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허가제조된 농약이라도 검사에서 성분미달이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농약 등 단속대상이 되는 불량농약을 봉인 수거하여 유통되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측면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는 이 두가지를 동시에 단속하고 있다. 즉 부정 또는 품질불량 농약이 적발되면 이들 농약을 봉인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한 업자도 처벌을 받게 되므로 결국은 양면 모두를 단속을 하는 것이다.

단속대상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원제업자, 판매업자 및 방제업자와 불법으로 농약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업자이다. 이 중에서도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농업 및 시중판매상)는 농약의 생산 및 유통조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농약을 단속하고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무허가 및 불법제조 농약처리

일차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허가 없이 불법으로 농약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와 무고시(無告示) 또는 무등록 부정농약이다. 이들을 단속하여 부정농약이 생산,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고 부정농약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허가(등록)취소는 물론 고발조치로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 표기사항 위반 및 약효보증기간

또한 허가제조된 농약이라 할지라도 농약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시한 농약,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농약, 분포장 또는 개포장한 농약, 제조업체의 자체검사필증이 첨부되지 않은 농약, 약액누출이나 라벨이 훼손되어 농약 용기나 포장의 표기사항의 식별이 곤란한 농약 등을 단속하고, 적발때는 봉인하여 수거하거나 폐기토록 한다. 아울러 이러한 농약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한 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농약의 표시 사항을 위반한 때는 그 농약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에게 경고하고 위반된 표시사항을 정정하게 하며, 농약의 표시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표시를 한 때 약효보증기간경과 농약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한 때 및 농약을 개포장 또는 분포장 하여 판매한 때에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당해품목의 등록취소와 고발조치하고, 판매업자는 판매업 등록취소와 고발조치를 한다. 자체검사필증이 첨부되지 않은 농약이나 농약의 용기나 포장의 표기사항이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농약을 제조, 수입한 자는 두번까지는 경고하고 세번째는 당해품목을 1년간 제조, 수입 및 판매금지 시킨

다. 이런 농약을 판매한 자는 첫번째는 경고하고 두번째는 1개월간 영업정지 시키며 세번째는 판매업 등록을 취소한다.

### 허위 과대광고 및 제한기준 위반

그리고 농약에 대한 허위광고나 과대광고, 농약의 취급제한 기준 위반 및 농약관리대장 등 장부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그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것 등도 단속한다. 이것은 농약의 표시 사항과 다르게 광고하므로써 농민들이 농약을 잘못 사용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취급제한 기준을 지키지 않으므로써 농약의 독성으로 인해 인체에 위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항을 위반한 업자에 대하여도 일차적으로 경고하거나 당해품목 또는 원제의 1년간 제조, 수입 및 판매금지외 판매, 방제업자는 3개월 영업정지 한다. 위반사항이 무거울 때는 품목등록 취소 및 고발을 하고 판매업자는 판매업 등록취소와 고발을 한다.

**지난해 단속실적은 129건  
이중 50%가 보증기간경과**

지난해의 단속실적은 129 건인데 이중 약효보증기간경과 농약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농협 및 시중 판매상은 연중 수시로 판매농약 중

에서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농약이 있는지 점검하여 반품 또는 폐기 조치하고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

부정농약이나 품질불량 농약 단속을 위해 농약 대량소비 지역, 부정농약 발생이 많은 지역, 주요 반입 반출지역 및 기타 농민이나 판매업자 고발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 불시에 단속공무원을 투입하고 또 단속회수도 증가시켜 집중단속을 할 것이며, 특히 부정농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 그래서 부정농약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고자 하며 수도용 농약 및 제조량이 많은 농약 또는 직권검사 결과 문제가 있는 농약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을 할 것이다.

### 판매·소비자 합심으로 해결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립농업자재검사소에서는 농약의 품질관리를 위한 이화학적 및 생물학적 직권검사와 불량농약의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한 기관의 능력만으로는 시중 유통농약 전부를 검사하기는 어려워 불량농약을 근절시키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농약제조업체들은 농약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한 이화학적 검사는 물론 약효 및 약해에 대한 생물학적 검사도 충분히 실시하여 자사제품에 대하여는

◇ 올해 농약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 및 단속계획 ◇

자신있게 품질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통농약에 대한 단속은 지역별로 단속책임이 있는 시·도(시·군)에서 판매에 불량농약이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판매업자도 불량농약을 판매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농민들도 시장에서 농약을 구입할

때 정상품인지를 꼭 확인하여 구입하고 불량농약은 고발하므로써 불량농약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국가기관 뿐만아니고 제조업체, 판매업체 및 사용자인 농민에 이르기까지 농약의 품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때 불량농약의 유통체는 확립될 것이다.

(농약빈병회수에술선참여합시다)

논두렁·밭두렁, 수로변등에 함부로 방치된 농약빈병은 자연환경의 파괴는 물론 토양 및 수질오염을 초래 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깨진 농약빈병에 우리의 귀여운 자녀들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쓰고난 농약빈병은 새마을 영농회별로 설치된 빈병수집장에 모아 안전하게 폐기토록 하거나 새마을 영농회장에게 반납토록해 빈병공해 없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꾸는데 우리 모두 앞장서야겠습니다.